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1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문성호, 박춘선,
신동원, 옥재은, 이성배,
임춘대, 최민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투입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단지가 대부분임 .
- 또한, 재건축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규모가 50%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성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.
-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상기 임대주택 규모 50 %를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30%로 완화하려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건축 시 법 제54조제4항제1호에서 시·도조례로 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으로 함.(안 제3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법 제54조제4항제1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을 말하고 법 제54조제4항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 율 등) ① <u>법 제54조제4항제1호</u> <u>및 제2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</u> <u>하는 비율”은 법적상한용적률</u> <u>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</u> <u>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</u> <u>말한다.</u>	제30조(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 율 등) ① <u>법 제54조제4항제1호</u> <u>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</u> <u>율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</u> <u>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</u> <u>용적률의 100분의 30을 말하고</u> <u>법 제54조제4항제2호-----</u> <u>-----.</u>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조례 제30조 (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)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완화 (100분의 50 → 100분의 30)하여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규모에 대한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